

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1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4.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개정이유

- 고등교육법 제정으로 학교명칭을 대학 자율로 사용하도록 됨에 따라
- 사용대학 명칭을 도립대학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전문대학을 대학으로 변경하여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타 대학과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함

□ 주요골자

- 조례제명을 "충청북도립옥천대학설치조례"로 함
- 고등교육법과 부합하는 대학의 설치목적 변경 (조례 제1조)
- 대학의 명칭을 "충북도립옥천대학"으로 함 (조례 제2조)

□ 관련법령

-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
- 고등교육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3항
- 고등교육법 제47조
-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(교육부)

조례 제 호

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명 “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”를 “충청북도립옥천대학 설치조례”로 한다

- 제1조중 “증견”을 “전문”으로 한다.
- 제2조중 “옥천전문대학”을 “충북도립옥천대학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교명변경은 인가일부터 적용 한다